

[불 임 1]

지구(예하 사업소)

지구	예하 사업소
인천 / 부천 지구	인천본부 직할, 전력관리처, 남인천지사, 부천지사, 제물포지사, 서인천지사, 강화지사, 영종지사
김포 지구	김포지사
시흥 지구	시흥지사

※ 지원서 접수 시 반드시 공지된 지구 중 희망지구를 선택하여 기재

※ 지구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음

※ 희망 근무지 고려하여 배치하나 합격자 간 희망지 중복시 근무 희망 사업소에
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

[불 임 2]

자격증 및 경력 가점표 [동점자 처리기준]

□ 자격증 가점

분 야	배 점	종 류
한국사	10점	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
한국어	10점	국어능력인증 3급 이상, KBS한국어능력 3+급 이상, 한국실용글쓰기 준 2급 이상
IT분야	10점	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

신규채용자의 결격 사유

(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(破産)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10.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3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5.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